

2.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5,238號 1996. 12. 31

주요 골자

- 가. 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중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하는 개발부담금의 2분의 1을 시·도에 귀속하도록 함(영 제3조).
- 나. 개발부담금이 50퍼센트 감면되는 사업에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을 추가함(영 제5조).
- 다.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와 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등의 체육시설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함(영 별표 1).

개정 이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072호)에 의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배분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및 감면대상사업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